

회원시·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

□ 개정사유

- 회원시·도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(감사 제외)

<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 시('20~'23년) 지방체육회에서 “지방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” 지속 건의>

- ▲무보수, 명예직의 비상근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과도*
- ▲중소도시의 경우 임원 인력풀 부족 ▲피선거권 침해 등

* 위탁선거법 적용 선출직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 없음

□ 주요내용

- 회원시·도체육회(지방체육회) 임원 연임 제한 폐지(감사 제외)
 - (제29조 제1~5,11~12항) 임원 연임 제한 내용 수정 및 삭제
 - (제38조 제1항)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목적 정비(설치 목적을 정관과 일치 및 임원의 연임 심의 삭제)

□ 별첨: 회원시·도체육회 규정 개정(안) 전문